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분회계처리 위반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2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2.
3. 회부연월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보험사업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하는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및 안 제38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8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생략) 2.·3. (생략) ④ (생략)	제3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 및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였고, 해당 TF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1차: '25. 9.30. / 2차: '25.12.30.)한 바 있음.

[경제형벌 합리화 1차/2차 방안 주요 내용]

1차 방안 (110개 규정 대상)	2차 방안 (331개 규정 대상)
❶ 배임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벌규정 정비 등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 ❷ 형벌이 아닌, 징벌적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 ❸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❹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로 전환	❶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억제되도록 형벌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성 중점 강화 ❷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등 사업주의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지원 ❸ 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불합리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을 정비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대상인 110개 규정 중 현행법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보험사업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현행법은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¹⁾, 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공적 성격의 정책보험으로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고, 현행법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행정벌)의 일종으로, 행정벌 중에서도 행정질서벌이자 금전벌에 해당하는데, 마찬가지로 행정벌의 일종인 벌금은 금전벌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행정형벌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분됨²⁾.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국회사무처 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p.804

[과태료(행정질서벌)와 벌금(행정형벌)의 비교]

구 분	과 태 료	벌 금
개 념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범죄인에 대한 형벌로서 금전적 제재
대상행위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적용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과주체	1차: 행정청 2차: 법원(이의제기 시)	법원
불복절차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형사소송
효 과	-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기록 미발생 - 미납 시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 강제징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	-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기록 발생 - 미납 시 환형유치, 사회봉사 가능

(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p.804)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³⁾.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예시)]

1. 신고의무 위반(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등)
2. 장부(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개정안)
3. 허가증·등록증·면허증 등의 갱신 또는 반납 불이행
4.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의무 위반
5. 자료·물건제출, 보고·출석·답변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

3) 국회사무처 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p.809

6.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7.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8. 공공기관, 그 밖의 특수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공의 불이행, 규정·명령·지시 위반
9. 검열·검영 또는 검직 금지의무 위반
10.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사용의 거부·방해
11.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 수수
12. 그 밖에 경미하거나 수시로 과해지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또는 명령의 위반

(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p.809-810)

현행법 상 보험사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 해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예시적인 위반 행위 중 “장부의 작성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개정안과 같이 현행 벌칙 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전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 간 구분회계처리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면, 현재 시행 중인 해당 법률들은 벌칙을 제재 수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벌칙 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전환 시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입법례 대비 가벼운 제재를 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회계처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입법례4)]

법 률	제 재 수 준
농어업재해보험법	5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집단에너지사업법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사업법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보험사업자의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정안과 같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5).

문 의 처

02)6788-5349

4) 참고로, 해당 법률들은 정부가 발표한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서 제외되어 있음.

5)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최초 시행된 2006년 이후 구분회계처리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업자에게 벌칙이 부과된 사례는 없음.